

## **【다름자산운용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】**

### **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**

- (1)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2)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3)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(5)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
- (6)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
- (7)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### **2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**

- (1)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: 고유자산 운용 부문/집합투자업 부문
- (2)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: 미공개중요정보/고유자산 운용정보/고객자산 운용정보/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정보

### **3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**

- (1)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(2)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,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(3)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.

#### 4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- (1)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정보교류통제책임자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 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.
- ①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,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,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
  - ②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  - ③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  - ④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  - ⑤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.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.
  - ⑥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.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.
- (2)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①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할 법인의 특정증권등(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)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(자본시장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)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
  - ②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- ③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
  - ④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  - ⑤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(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

5. 시행일 : 2021.05.20